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6. 24.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규식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폭언·폭행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공동주택 관리원(경비원), 미화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구청장, 입주자 등의 책무, 관리원등의 권리(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)

다. 관리원등 지원내용(안 제5조)

- 1)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 등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
- 2) 관리원등의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
- 3)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
- 4)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

사항

라.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대한 근거(안 제6조)

- 1)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마. 인권교육 및 홍보, 표창 수여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4. 22. ~ 2021. 5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-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, 관리원등, 입주자, 사용자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, 기본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2. “관리원등”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※ 경비업무종사자에 대한 호칭을 ‘관리원’으로 개선
(공동주택 경비원 호칭개선운동 추진계획 반영, 구청장방침 제113호, '21.3.12.)

● **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**

-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,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

● **관리원등의 권리와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무(안 제4조)**

- 관리원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,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과
-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협력 등 입주자 등의 책무를 명시함

● **지원,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(안 제5조 ~ 안 제6조)**

- 안 제5조에서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, 무료 법률 상담 지원,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 관리원등 피해발생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금 심의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가능하도록 규정함

● **인권 교육 및 홍보, 표창(안 제7조 ~ 안 제8조)**

- 안 제7조에서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

- 안 제8조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 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입주민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

-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,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·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¹⁾을 발표하였습니다.
- 또한,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업무 이외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 지시·명령 금지 및 일반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 등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.
- 아울러 우리 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여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,
 -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
 -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을 위한 근무 시설 개선사업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올해 4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‘경비원’ 호칭을 ‘관리원’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손한 언어

1)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(2020.7.8.)

사용, 휴게시간 존중하기, 부당한 업무 요구하지 않기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성동구 주민의 81%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147개 단지에 960명의 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,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와 관리원이 서로 존중하며 인권침해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최근 사회적 관심과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.

■ 아파트 현황 : 147개 단지 66,531세대(2020년 11월 기준)

합 계	150세대 이하	151~1,000세대 미만	1,000~2,000세대 미만	2,000세대 이상
147	37	97	13	3

■ 관리원 수

(단위:명/단지)

계	60세 이하	60세 이상
960	231	729